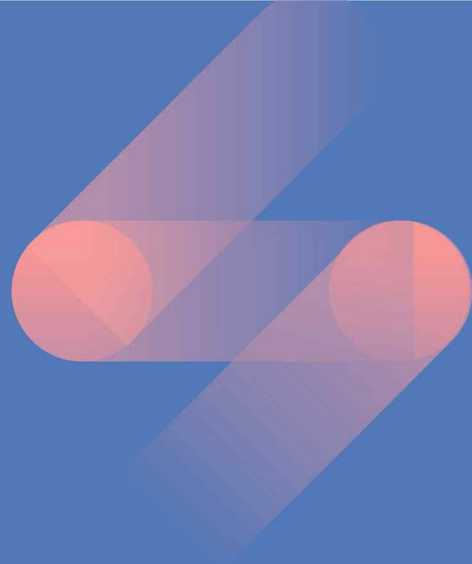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1

제 1 부 언론조정현황

언론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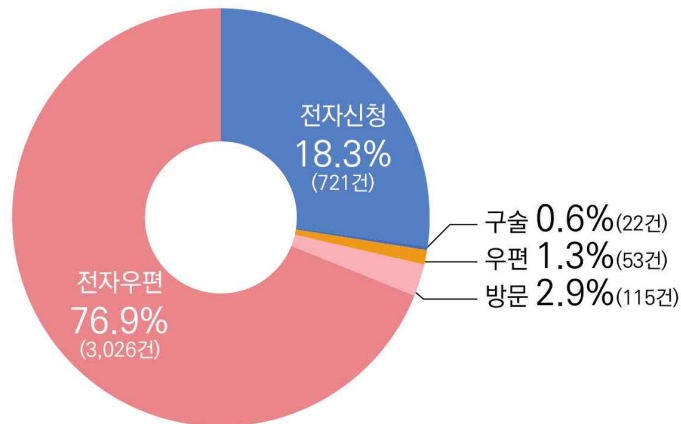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4년 3,93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조정신청은 2023년과 같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가 3,026건(7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전자신청)이 721건(18.3%), 방문 115건(2.9%), 우편 53건(1.3%), 구술¹⁾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3,747건(95.2%)의 조정신청이 전자우편, 전자신청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방문, 구술과 같이 위원회 내방을 통한 신청은 137건(3.5%)이었다.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전체 3,937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2,923건(74.2%)은 서울 8개 중재부가, 1,014건(25.8%)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처리하였다.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8개 중재부가 평균적으로 365건(약 9.3%)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은 경기중재부 226건(5.7%), 전북중재부 158건(4.0%), 대구중재부 126건(3.2%), 광주중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술 신청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내방하여 조정신청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111건(2.8%), 충북중재부 101건(2.6%), 대전중재부 82건(2.1%), 부산중재부 69건(1.8%), 경남 중재부 61건(1.5%), 제주중재부 42건(1.1%), 강원중재부 38건(1.0%) 순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01
인문·조건·원형

3. 조정사건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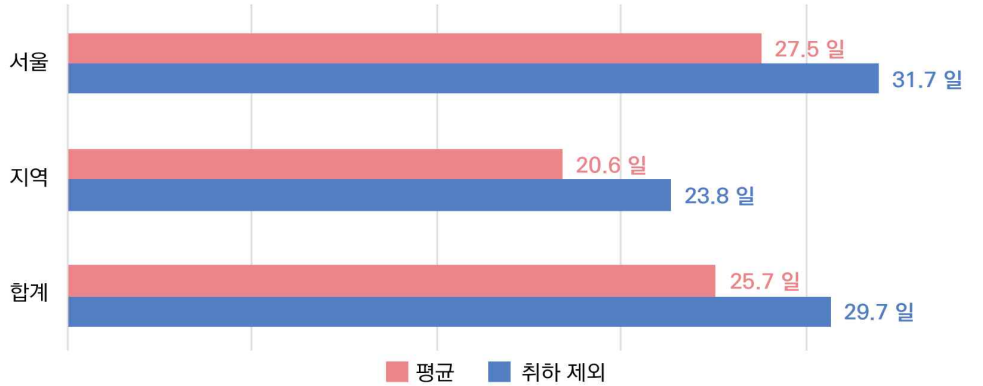
2024년 조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²⁾은 25.7일이었다. 서울중재부가 27.5일, 지역중재부가 20.6일로 서울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 차이는 6.9일이었다.

신청인이 심리 전 피해구제,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조정신청을 철회한 취하 사건을 제외하고 심리가 개최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평균 처리기간은 29.7일로 전체 평균보다 4일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중재부별로 적용하면 서울중재부 31.7일, 지역중재부 23.8일로, 심리전 취하 사건을 포함한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4.2일, 지역은 3.2일이 더 소요되었다.

2)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언론조정현황

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청구권별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824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231건(31.3%), 반론보도청구 825건(21%), 추후보도청구 57건(1.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³⁾은 72.5%였다.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정보도청구 74.8%, 손해배상청구 67.2%, 추후보도청구 6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청구명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정정 | 1,824 | 703 | 38 | 31 | 301(8) | 141 | 23 | 492 | 95 | 74.8 |
| 반론 | 825 | 310 | 27 | 15 | 111 | 62 | 4 | 236 | 60 | 75.5 |
| 추후 | 57 | 18 | | | 14 | 2 | 1 | 17 | 5 | 64.8 |
| 손배 | 1,231 | 421 | 23 | 20 | 223(6) | 131 | 10 | 283 | 120 | 67.2 |
| 계 | 3,937 | 1,452 | 88 | 66 | 649(14) | 336 | 38 | 1,028 | 280 | 72.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3)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조정의 특성상 신청인의 본래 청구와 다른 형태로 합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본다.

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병합청구⁴⁾를 하나의 조정신청으로 간주한 신청건 기준으로는 2,264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합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정정보도 단독청구가 608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578건(25.5%), 정정보도·반론·손해배상 병합청구가 345건(15.2%), 정정보도·반론·손해배상 병합청구 281건(12.4%), 손해배상 단독청구 204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건 기준 전체 피해구제율은 72.5%로 청구권 기준 피해구제율 72.5%와 동일한 수치였다⁵⁾. 병합청구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이중 특기할 만한 유형의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보도·반론·추후·손배 청구(5건)와 정정보도·추후·손해배상 청구(4건), 그리고 정정보도·반론·추후·손해배상 청구(3건) 등은 모두 100%의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정정보도·반론·추후·손배 청구(281건)가 82.2%, 정정보도·반론·추후·손배 청구(608건)가 77.4%, 정정보도·반론·추후·손배 청구(345건)가 75.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반론·추후·손배 청구(65건)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46.8%로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표 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병합 유형 |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정정 | 608 | 229 | 10 | 11 | 98(2) | 49 | 15 | 180 | 16 | 77.4 |
| 반론 | 126 | 43 | 6 | 2 | 9 | 13 | 1 | 35 | 17 | 75.0 |
| 추후 | 16 | 2 | | | 3 | 2 | | 7 | 2 | 64.3 |
| 손배 | 204 | 46 | 2 | | 28 | 58 | 2 | 38 | 30 | 59.7 |
| 정정·반론 | 281 | 114 | 7 | | 35 | 22 | 1 | 91 | 11 | 82.2 |
| 정정·손배 | 578 | 216 | 7 | 7 | 117(6) | 46 | 5 | 128 | 52 | 67.7 |
| 정정·반론·추후 | 5 | 4 | | | | | | 1 | | 100.0 |
| 정정·반론·손배 | 345 | 134 | 14 | 13 | 51 | 24 | 2 | 92 | 15 | 75.2 |
| 정정·추후·손배 | 4 | 4 | | | | | | | | 100.0 |
| 정정·반론·추후·손배 | 3 | 2 | | | | | | 1 | | 100.0 |
| 반론·손배 | 65 | 13 | | | 16 | 3 | | 16 | 17 | 46.8 |
| 추후·손배 | 29 | 6 | | | 11 | | 1 | 8 | 3 | 50.0 |
| 계 | 2,264 | 813 | 46 | 33 | 368(8) | 217 | 27 | 597 | 163 | 72.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 4) 신청인은 조정신청 시 복수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청구는 병합되어 처리된다.
- 5) 통상적으로 신청건을 기준한 경우와 청구권을 기준한 경우의 피해구제율 간에 소폭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청건 기준은 병합된 청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피해구제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청구권 기준은 개별 청구(정정보도, 손해배상 등)를 독립적으로 집계하기에 특정 청구에 대해서만 구제된 것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신청인 유형별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2,154건(54.7%),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은 1,783건(45.3%)이었다. 피해구제율의 경우, 개인 신청 조정사건 72.8%, 단체 신청 조정사건 72.0%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및 단체별 조정사건을 종결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신청 조정사건은 피해구제 조치 후 취하 종결된 경우가 71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687건(31.9%), 조정불성립 결정 378건(17.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원조정대상보도의 검색과 열람을 차단하는 열람차단이 443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에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는 내용 또는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보도게재가 115건(16.0%), 조정대상보도의 내용 수정을 의미하는 기사수정이 88건(12.3%) 순으로 많았다.

2024년 개인 신청 조정사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피해구제 조치 중 열람차단으로 인한 취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피해구제 조치 후 취하된 689건 중 261건(37.9%)이 열람차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2024년에는 이 수치가 443건(61.8%)로 상승해 전년 대비 2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동일 신청인이 여러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이른바 '다량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2024년 열람차단으로 인해 취하된 사건 127건의 당사자인 신청인은 이 중 124건에 대해 피신청인의 신속한 열람차단 조치 후, 심리 기일 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심리 출석 등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 신청인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식을 선택한,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신청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성립 765건(42.9%),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311건(17.4%), 조정불성립결정 271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열람차단 81건(26.0%)이었다. 다음으로는 보도게재와 기사수정이 각각 75건(24.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당사자 간 화해 54건(17.4%), 기타 26건(8.4%) 등이 뒤를 이었다.

표 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신청인 유형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개 인 | 2,154 | 687 | 21 | 29 | 378(14) | 147 | 31 | 717 | 144 | 72.8 |
| 단 체 | 1,783 | 765 | 67 | 37 | 271 | 189 | 7 | 311 | 136 | 72.0 |
| 계 | 3,937 | 1,452 | 88 | 66 | 649(14) | 336 | 38 | 1,028 | 280 | 72.5 |



나.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 신청 조정사건 2,154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37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가 327건(15.2%), 교육자 287건(13.3%), 회사원 260건(12.1%), 공무원 151건(7.0%) 순이었고,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304건(14.1%)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직업 중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연예인(100%)이었고, 공공기관장 94.7%, 고위공무원 90%, 교육자 86.3%, 학생 85.7%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시민활동가 였는데, 총 8건의 사건 중 2건(25.0%)만 조정성립이 되었고 4건(50.0%)은 조정불성립, 2건(25.0%)은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개인 신청 조정사건 2,154건 중 신청인이 공인인 경우가 416건(19.3%), 일반인인 경우가 1,738건(80.7%)이었다. 피해구제율은 공인이 64.6%, 일반인이 74.8%로 각 집계되어, 일반인의 경우 10.2%p 높았다.

표 7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개인 신청인 직업 유형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 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정치인 | 377 | 114 | 1 | 6 | 70 | 37 | | 94 | 55 | 61.5 |
| 공공기관장 | 19 | 14 | 3 | | | | | 1 | 1 | 94.7 |
| 고위공무원 | 20 | 14 | | | 2 | | | 4 | | 90.0 |
| 공무원 | 151 | 30 | | 2 | 18(2) | 2 | | 91 | 8 | 82.6 |
| 전문직 종사자 | 109 | 55 | 4 | | 20 | 3 | 2 | 23 | 2 | 78.8 |
| 문화·예술·체육인 | 91 | 34 | 3 | 4 | 18 | 5 | | 22 | 5 | 68.6 |
| 종교인 | 27 | 17 | | | 10 | | | | | 63.0 |
| 회사원 | 260 | 84 | 3 | 3 | 25 | 4 | | 128 | 13 | 84.0 |
| 언론인 | 98 | 25 | | | 20(4) | 5 | | 46 | 2 | 80.6 |
| 교육자 | 287 | 75 | 5 | 6 | 26 | 3 | | 165 | 7 | 86.3 |
| 개인사업가 | 327 | 117 | | | 81(8) | 8 | 10 | 91 | 20 | 69.9 |
| 연예인 | 11 | 1 | | | | 3 | | 7 | | 100.0 |
| 학생 | 36 | 10 | | | 2 | 8 | | 14 | 2 | 85.7 |
| 시민활동가 | 8 | 2 | | | 4 | 2 | | | | 33.3 |
| 조합대표 또는 협회장 | 29 | 16 | 2 | 2 | | | | 2 | 7 | 69.0 |
| 기타 | 304 | 79 | | 6 | 82 | 67 | 19 | 29 | 22 | 49.5 |
| 계 | 2,154 | 687 | 21 | 29 | 378(14) | 147 | 31 | 717 | 144 | 72.8 |

※ 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

표 8 공인 및 일반인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공인 여부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공 인 | 416 | 142 | 4 | 6 | 72 | 37 | | 99 | 56 | 64.6 |
| 일 반 인 | 1,738 | 545 | 17 | 23 | 306(14) | 110 | 31 | 618 | 88 | 74.8 |
| 계 | 2,154 | 687 | 21 | 29 | 378(14) | 147 | 31 | 717 | 144 | 72.8 |

※ 공인은 개인 직업 분류 중 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개인 연령대별⁶⁾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이 신청한 2,154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신청인이 40세에서 49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578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세에서 59세 이하 538건(25.0%), 60세에서 69세 이하 491건(22.8%), 30세에서 39세 이하 339건(15.7%)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은 20세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8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세에서 49세 이하 75.9%, 60세에서 69세 이하 74.5%, 50세에서 59세 이하 70.9%, 30세에서 39세 이하 70.4% 순으로 높았다.

표 9 개인 연령대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개인 신청인 연령대 분류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19세 이하 | 33 | 8 | | | 8 | | 2 | 13 | 2 | 67.7 |
| 20세~29세 | 53 | 15 | 1 | | 3 | 10 | | 20 | 4 | 83.7 |
| 30세~39세 | 339 | 70 | 6 | 3 | 51 | 40 | 2 | 133 | 34 | 70.4 |
| 40세~49세 | 578 | 136 | 4 | 10 | 57(1) | 35 | | 271 | 65 | 75.9 |
| 50세~59세 | 538 | 244 | 5 | 10 | 125(9) | 18 | 4 | 108 | 24 | 70.9 |
| 60세~69세 | 491 | 190 | 5 | 2 | 110(4) | 28 | 5 | 142 | 9 | 74.5 |
| 70세 이상 | 119 | 24 | | 4 | 24 | 16 | 15 | 30 | 6 | 61.4 |
| 연령대 불명 | 3 | | | | | | 3 | | | |
| 계 | 2,154 | 687 | 21 | 29 | 378(14) | 147 | 31 | 717 | 144 | 72.8 |

6) 연령대는 신청인의 생년에 기반하여 만연령으로 구분하였다.



라.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이 단체인 조정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체의 경우가 456건 (25.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정 단체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정당 249건(14.0%), 조합 및 협회 205건(11.5%), 지방자치단체 181건(10.2%), 교육기관 131건 (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단체는 조합 및 협회로 90.2%를 기록했다. 차순위로 종교단체가 88.9%이었고, 이어서 공공단체 87.0%, 노동조합 78.6%, 지방자치단체 78.5%로 확인되었다. 피해 구제율이 가장 낮은 단체는 교육기관(56.2%)이었는데, 전체 교육기관 신청 사건 131건 중 동일 단체가 신청한 51건(38.9%)의 조정사건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어 피해구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단체 유형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 미구제 |
| 국가기관 | 76 | 36 | | | 18 | | | 22 | | 76.3 |
| 지방자치단체 | 181 | 87 | 17 | 3 | 31 | | | 38 | 5 | 78.5 |
| 공공단체 | 54 | 37 | | 4 | 2 | | | 10 | 1 | 87.0 |
| 정당 | 249 | 91 | 2 | 2 | 25 | 48 | | 60 | 21 | 76.1 |
| 조합 및 협회 | 205 | 74 | 6 | | 9 | 72 | | 40 | 4 | 90.2 |
| 종교단체 | 19 | 9 | | | 1 | 1 | | 7 | 1 | 88.9 |
| 일반기업체 | 456 | 228 | 27 | 18 | 87 | 9 | 6 | 69 | 12 | 73.5 |
| 언론사 | 47 | 26 | 3 | | 12 | | | 6 | | 74.5 |
| 교육기관 | 131 | 54 | | 4 | 51 | 1 | | 19 | 2 | 56.2 |
| 노동조합 | 42 | 22 | | 6 | 3 | | | 11 | | 78.6 |
| 기타 | 323 | 101 | 12 | | 32 | 58 | 1 | 29 | 90 | 53.8 |
| 계 | 1,783 | 765 | 67 | 37 | 271 | 189 | 7 | 311 | 136 | 72.0 |

7.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조정사건을 피신청인 매체 유형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신청된 경우가 2,537건 (64.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3년 순위와도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과 방송사닷컴 등에

제부

언론조정현황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12.0%),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뉴스통신 176건(4.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구제율은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신문 75.4%, 신문 71.3%, 인터넷뉴스서비스 68.7%, 잡지 60.0%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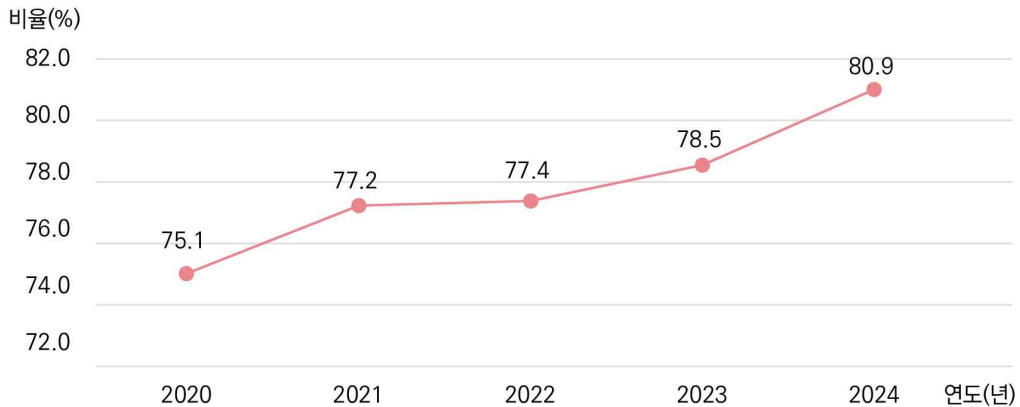
표 11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매체 유형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신 문 | 376 | 178 | 14 | 14 | 53 | 21 | 13 | 52 | 31 | 71.3 |
| 방 송 | 317 | 141 | 13 | 6 | 77 | 13 | 6 | 21 | 40 | 58.7 |
| 잡 지 | 10 | | | | 4 | | | 6 | | 60.0 |
| 뉴스통신 | 176 | 53 | 6 | | 30(2) | 27 | | 53 | 7 | 76.5 |
| 인터넷신문 | 2,537 | 870 | 42 | 40 | 382(12) | 226 | 15 | 808 | 154 | 75.4 |
| 인터넷뉴스서비스 | 473 | 197 | 13 | 6 | 86 | 41 | 4 | 84 | 42 | 68.7 |
| 기 타 | 48 | 13 | | | 17 | 8 | | 4 | 6 | 42.5 |
| 계 | 3,937 | 1,452 | 88 | 66 | 649(14) | 336 | 38 | 1,028 | 280 | 72.5 |

한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에 대한 조정 사건은 3,186건(80.9%)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인터넷 기반 매체들에 대한 조정신청은 전체 신청 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연도별 전체 조정사건 대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의 비율 추이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최근 5년간 전체 사건 대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비율 추이 (2020. 1. 1. ~ 2024. 12. 31.)



나. 인터넷 기반 매체 열람차단 피해구제 현황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3,186건의 조정사건 중 피해가 구제된 건은 2,140건이었다. 이 중 인터넷에서 원 조정대상보도의 검색과 열람이 불가하도록 조치하는 열람차단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663건(31.0%)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비율은 2023년에 비해서 약 10%p 증가한 것이다. 2023년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으로 신청된 사건 중 피해가 구제된 사건은 2,248건이었고, 이 중 열람차단으로 종결된 경우가 471건(21.0%)이었다.

표 13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건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A] | 기각, 각하 건수 [B] |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C] |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건수 [D] | 비율 [D]/[C] |
|--------------------|---------------|-----------------|-----------------------|-------------------|------------|
| 3,186 | 313 | 2,873 | 2,140 | 663 | 31.0% |

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266건이었다. 이 중 유튜브(Youtube)등 동영상 플랫폼의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여 신청한 조정사건은 43건(16.2%)이었고,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보도물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는 223건(83.8%)이었다.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면, 2023년 35건(10.7%)에 비해 2024년은 43건(16.2%)으로 5.5%p정도 늘었다. 특히 2024년에는 쇼츠(Shorts) 등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조정신청도 있는데, 최근 언론사 뉴스콘텐츠가 숏폼(Short Form) 콘텐츠로 빈번히 재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서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사의 원 매체에 게재된 보도를 자사 동영상 플랫폼에도 함께 게재한 원 보도 매개 유형이 233건(87.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용으로 만들어진 자체제작 유형이 33건(12.4%)이었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의 전체 피해구제율은 61.3%였다. 그 중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42.9%,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보도에 대해 부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64.4%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원 보도 매개의 경우 65.9%, 자체 제작의 경우는 31.3%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14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대상 매체 | 콘텐츠 유형 | 청구 건수 | 처리 결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 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 원 보도 매개 | 31 | 11 | | | 9 | 7 | | 4 | | 62.5 |
| | 자체 제작 | 12 | | | | 6 | 1 | | | 5 | |
| | 소 계 | 43 | 11 | | | 15 | 8 | | 4 | 5 | 42.9 |
|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 원 보도 매개 | 202 | 108 | 10 | 3 | 43 | 7 | 8 | 6 | 17 | 66.3 |
| | 자체 제작 | 21 | 10 | | | 11 | | | | | 47.6 |
| | 소 계 | 223 | 118 | 10 | 3 | 54 | 7 | 8 | 6 | 17 | 64.4 |
| 합 계 | | 266 | 129 | 10 | 3 | 69 | 15 | 8 | 10 | 22 | 61.3 |

8.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년도 역시 여느 해와 유사하게 전체 조정사건의 96.8%에 해당하는 3,810건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청되었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인격권 침해 관련이 95건(2.4%)이었고, 재산상 손해는 4건(0.1%)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작권 등 기타 침해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28건(0.7%)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 관련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2.6%였는데, 이 중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구제된 경우가 1,431건(3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가 982건(25.8%), 직권조정결정을 포함한 기타 방식에 의한 피해구제가 102건(2.7%)이었다. 참고로, 위원회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된 경우는 631건(16.6%)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격권 중 성명권(3건)과 사생활 침해(1건)의 경우는 100%의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음성권 침해는 66.7%, 초상권 침해는 58.7%로 확인되었다. 재산상 손해로 인한 조정사건의 경우 3건은 조정성립, 1건은 기각(피해구제율 100%)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조정성립 6건, 피해구제 조치로 인한 취하 6건 및 기각 15건, 사유 미상의 취하 1건으로 92.3%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1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매체 유형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피해 구제율 (%) |
|--------|-------|---------|--------|----|----------|-----|----|-------|-----|------------|
| | | 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 조정 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동의 | 이의 | | | | 구제 | 미구제 | |
| 명 예 훼손 | 3,810 | 1,431 | 88 | 63 | 631(14) | 312 | 36 | 982 | 267 | 72.6 |
| 초상권 침해 | 85 | 8 | | 3 | 18 | 8 | 2 | 36 | 10 | 58.7 |
| 음성권 침해 | 6 | 4 | | | | | | | 2 | 66.7 |
| 성명권 침해 | 3 | | | | | | | 3 | | 100.0 |
| 사생활 침해 | 1 | | | | | | | 1 | | 100.0 |
| 재산상 손해 | 4 | 3 | | | | 1 | | | | 100.0 |
| 기 타 | 28 | 6 | | | | 15 | | 6 | 1 | 92.3 |
| 계 | 3,937 | 1,452 | 88 | 66 | 649 | 336 | 38 | 1,028 | 280 | 72.5 |

※ 침해유형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통계는 신청인이 주된 침해로 선택한 유형 기준으로 작성

9.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조정사건은 154건이었다. 전체 사건에 대비하여 3.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3년 95건(2.3%)에 비해 비율과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직권조정결정된 154건 중 62건(40.3%)은 서울중재부에서, 92건(59.7%)은 지역중재부에서 처리했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하여 확정된 경우가 88건(57.1%)이었고, 이의가 신청된 경우는 66건(42.9%)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 주체별로 보면, 신청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16건(10.4%), 피신청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49건(31.8%), 양당사자 모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1건(0.6%)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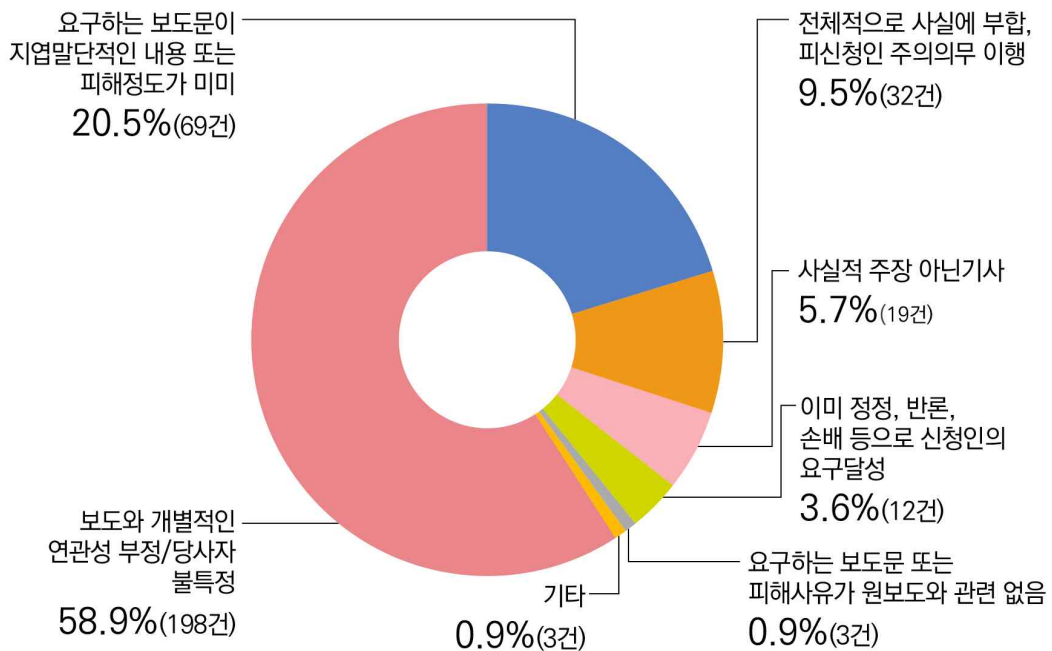
| 구분 | 건수 |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 | | | |
|----|-----|-------------|----------|-----------|-----------|----|
| | | 동의 | 이의 | | | 소계 |
| | | | 신청인 이의신청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양당사자 이의신청 | |
| 서울 | 62 | 38 | 6 | 18 | | 24 |
| 지역 | 92 | 50 | 10 | 31 | 1 | 42 |
| 계 | 154 | 88 | 16 | 49 | 1 | 66 |



10. 기각 및 각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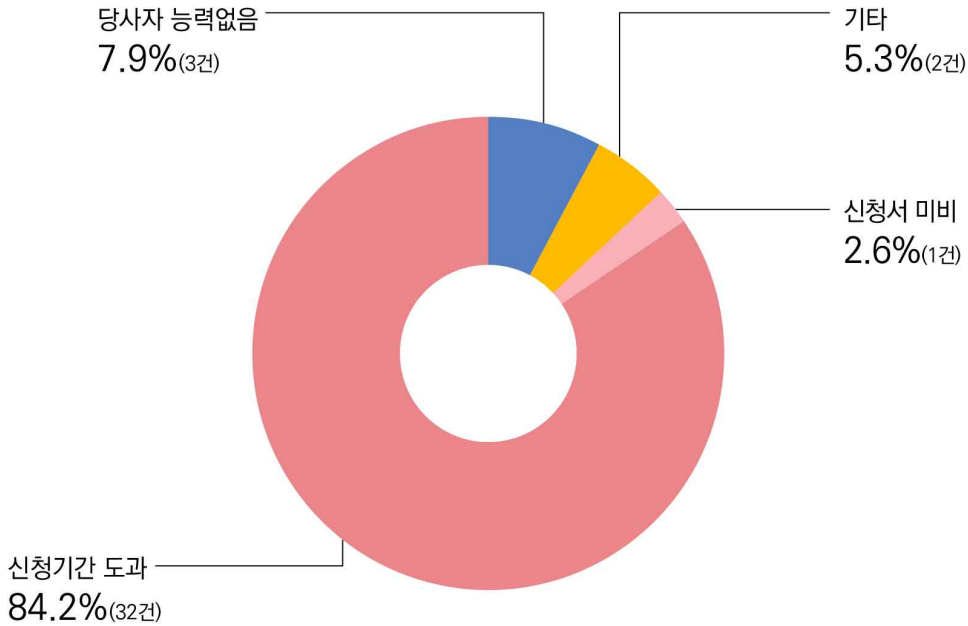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은 336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사이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198건(5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해당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69건(20.5%)이었는데, 이 중에는 동일 신청인이 여러 매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건이 57건 포함되었다. 그밖에 보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신청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32건(9.5%), 조정대상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 19건(5.7%), 피신청인이 이미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을 이행해 신청인의 요구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사례가 12건(3.6%)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유가 원보도와 관련이 없거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도 각각 3건(0.9%)으로 나타났다.

표 17 기각 사유



각하로 종결된 사건은 38건이었는데, 사유별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례가 32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3건(7.9%), 기타 2건(5.3%),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1건(2.6%)으로 파악되었다.

표 18 각하 사유



01 언론조정위원회

11.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가. 게재 유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된 사례는 총 1,287건이었다. 이 중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보도된 사례는 276건으로 전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사례 중 21.4%에 해당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사례가 251건(90.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별도의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된 경우 21건(7.6%), 언론사의 자체 정정·반론보도 지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된 사례와 기타 방식으로 피해구제 보도문이 이행된 사례가 각각 2건(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는 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경우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에 피해구제문이 게재된 사례는 1,011건(78.6%)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들의 경우 별도 피해구제보도를 이행하면서 원 보도 하단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761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원보도 하단에만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142건(14.0%), 피해구제보도만 별도로 이행한 사례가 108건(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신문, 방송,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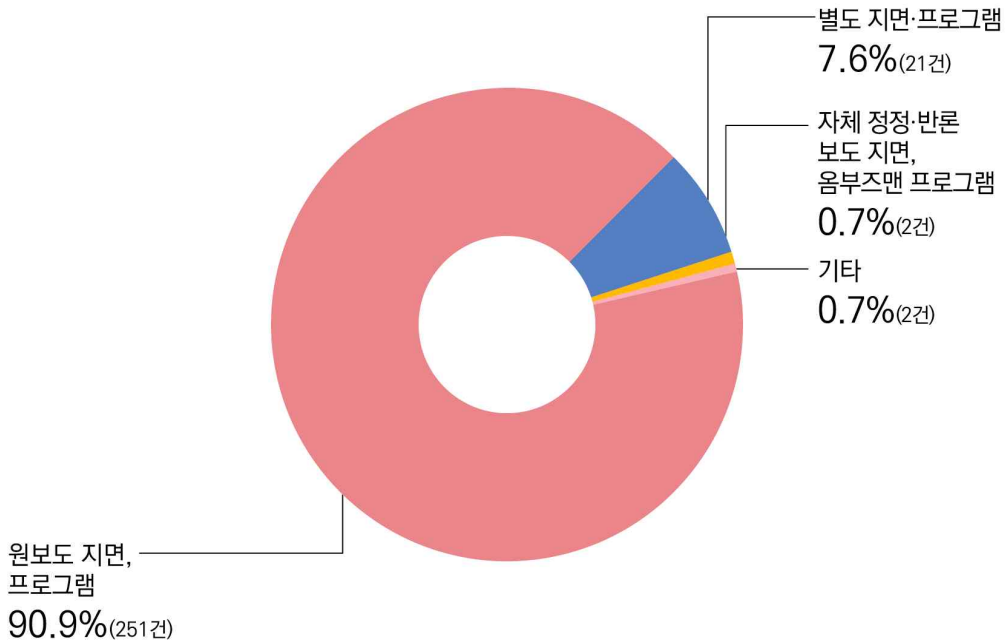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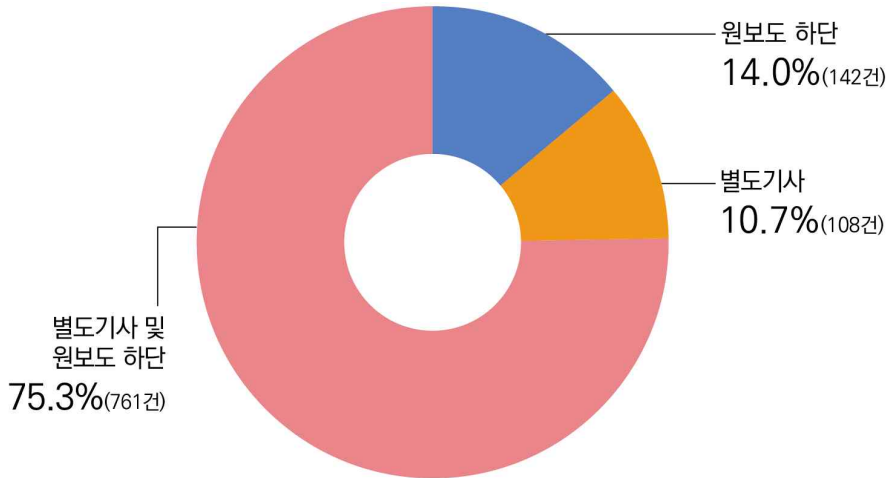


표 20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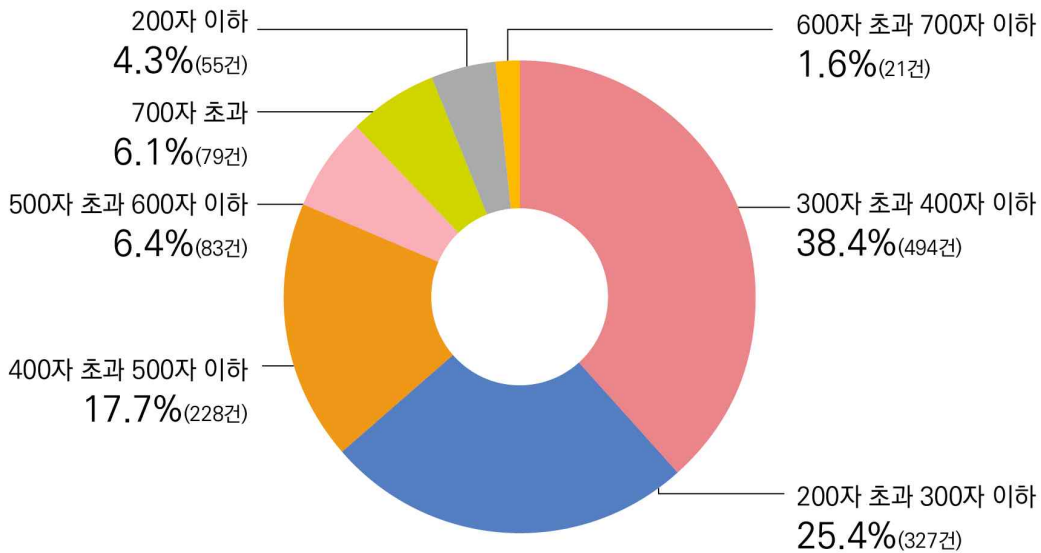


나. 보도문 길이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된 1,287건에 대해 보도문의 양을 분석해보면, 보도문의 양은 주로 200자에서 400자 사이(821건, 63.8%)였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인 보도문이 494건(38.4%)으로, 200자 초과 300자 이하인 보도문 327건(25.4%)에 비해 많았다. 400자 초과 500자 이하의 보도문은 228건(17.7%)으로 확인됐다.

200자 이하로 피해구제보도문의 길이가 다소 짧거나, 500자를 초과하는 긴 보도문의 경우는 건수와 비율 모두가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가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500자 초과 600자 이하인 보도문은 83건(6.4%), 700자 초과 79건(6.1%), 200자 이하 55건(4.3%), 600자 초과 700자 이하 21건(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피해구제보도문 길이



12.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1,231건의 조정사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2건(1.8%)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률⁷⁾을 살펴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이전 4개 연도의 손해배상 인용률은 2020년 3.4%, 2021년 5.4%, 2022년 1.8%, 2024년 2.1%였다.

언론조정현황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구액의 평균값은 6억 2,000여만 원, 중앙값은 2,0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경우 최저값과 최고값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살펴본 최빈값은 1,000만 원 259건(21.0%), 1억 원 177건(14.4%), 500만 원 132건(10.7%), 5,000만 원 113건(9.2%)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을 통해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평균값은 145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조정사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11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 8건(36.4%), 기타 침해 3건(13.6%)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2건)이었는데, 각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인해 신청된 조정 사건에서 나왔다.

표 22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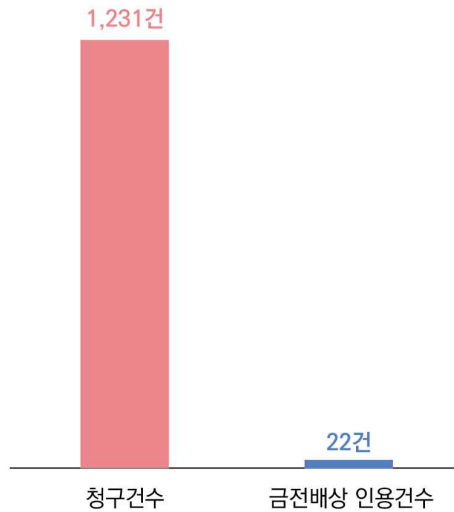


표 2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원)

| | 최저액 | 최고액 | 평균액 | 중앙액 |
|-----|---------|-----------------|-------------|------------|
| 청구액 | 1 | 220,000,000,000 | 620,578,012 | 20,000,000 |
| 조정액 | 300,000 | 5,000,000 | 1,450,000 | 1,000,000 |

표 24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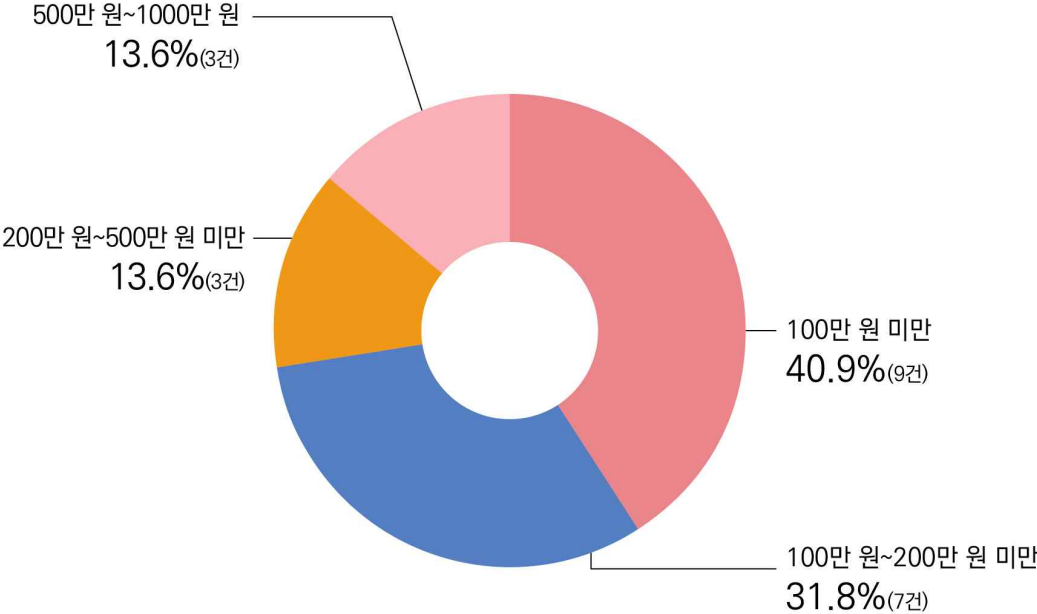


표 2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원)

| 침해유형 | 조정액 | 빈도 | 최저액 | 최고액 | 평균액 | 중앙액 | 최빈액 |
|--------|-----|----|---------|-----------|-----------|-----------|-----------|
| 명예훼손 | | 11 | 300,000 | 5,000,000 | 1,512,500 | 1,000,000 | 1,000,000 |
| 초상권 침해 | | 8 | 500,000 | 5,000,000 | 1,642,857 | 1,000,000 | 500,000 |
| 기타 | | 3 | 750,000 | 1,000,000 | 833,333 | 750,000 | 750,000 |